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가기관등의 우선구매 대상에 품질인증 제품 포함 등〉
■ 박충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165호)

2024.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국가기관등의 우선구매 대상에 품질인증 제품 포함 등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충권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6. 28.

다. 회부연월일 : 2024.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이후 키오스크 등의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나, 장애인·고령자가 이용하기 어려운 UI로 인하여 일상 생활 속의 정보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음.

현행법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제품의 우선 구매 제도와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제도를 두고,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때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내용을 표시하거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사실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선 구매 대상에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무인 키오스크 등의 유·무선 정보통신이 포함됨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여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우선 구매 대상이 되는 지능정보제품에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무인 키오스크 등 유·무선 정보통신이 포함됨을 명시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종에 속하는 자가 지능정보제품을 구매하거나 활용하려는 경우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유·무선 정보통신을 우선적으로 구매 또는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4항 및 제47조제5항).

Ⅲ. 검토의견

1. 국가기관등의 우선구매 대상에 품질인증 제품 포함 등

가. 개정안 요지

- 국가기관등의 우선구매 대상이 되는 지능정보제품에 정보통신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유·무선 정보통신을 포함하고(안 제46조제4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유·무선 정보통신을 우선구매 또는 활용하도록 권고함(안 제47조제5항 등).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6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 ③ (생략) ④ 국가기관등은 지능정보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u>지능정보제품의</u>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6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u>지능정보제품(제47조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유·무선 정보통신을 포함한다)의</u> ----- ----- -----.

현행	개정안
⑤ ~ ⑦ (생략) 제47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등) ① ~ ④ (생략) <u><신설></u> ⑤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기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그 밖에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제도 <u>운영에</u>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47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종에 속하는 자가 지능정보제품을 구매하거나 활용하려는 경우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유·무선 정보통신을 우선적으로 구매 또는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u> ⑥ ----- ----- ----- ----- <u>운영 등에</u> ----- ----- -----.

다. 검토사항

○ 현행법 제46조에¹⁾ 따르면 국가기관등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웹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하면서 이를 보장한 지능정보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 제47조에²⁾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성 품질인증(이하 “품질인**

②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이하 “지능정보제품”이라 한다)를 설계, 제작, 가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고령자 등이 별도의 보조기구 없이 지능정보제품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능정보제품이 보조기구와 호환될 수 있게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은 지능정보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지능정보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종류·지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른 우선 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검증기준, 검증절차, 구매촉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46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성 품질인증(이하 “정보통신 접근성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 중에 인증 업무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제5항에 따른 인증 기준 또는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을 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기준,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그 밖에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증”이라 함)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즉 현행법 제46조는 우선구매 제도를, 제47조는 품질인증 제도를 규정한 것으로 현행 법령에 따른 각 제도의 적용 대상 및 그 근거는 다음과 같음.

<우선구매 및 품질인증 제도의 적용 대상 및 근거 법령>

구분	적용 대상	근거 법령
우선구매	-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3항 ³⁾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별표4] ⁴⁾
품질인증	- 웹사이트 -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하는 응용소프트웨어(모바일앱)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5조 ⁵⁾

- 우선구매 제도는 공공에서 키오스크를 구매할 경우 장애인·고령자 등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접근성 보장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것을 말함.

- 3)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여부의 검증 및 검증 기준) ①·② (생략)
③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종류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4) 우선구매지능정보제품인 무인정보단말기의 종류로 무인민원발급기, 무인증명발매기, 금융자동화 기기, 무인발권기, 무인주유기, 셀프체크인, 무인발매기, 무인주문기, 무인사용자 인증기, 무인결제기, 무인주차정산기, 무인도서대여반납기, 종합정보시스템, 위치정보시스템 등을 규정함.
- 5)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대상)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이란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유·무선 정보통신을 말한다.
- 제34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전자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이란 다음 각 호의 유·무선 정보통신을 말한다.
1. 웹사이트
 2.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이하생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품의 접근성을 검증하여 우선구매 대상으로 선정하고 객관적·전문적인 검증을 위해 외부 시험평가 기관을 공모·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우선구매 제도 운영을 위한 검증 추진체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품질인증 제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성 기준을 준수한 정보통신을 인증하여 홍보를 지원하는 것을 말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웹접근성 품질인증 제도를 운영 중으로 2014년에 3개의 민간 인증기관을⁶⁾ 지정한 후 웹사이트에 대해 자율적 신청방식에 따라 인증을 발급하고 있음.
- 2014년부터 2023년까지의 누적 인증 발급 건수는 총 25,720건이고 최근 5년간 인증 발급 현황은 다음과 같음.

6)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와치,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인증 발급 현황(2019년 ~ 2023년)>

(단위: 건)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공 공	1,600	1,805	1,958	2,180	2,410
민 간	1,021	1,206	1,291	1,366	1,310
합 계	2,621	3,011	3,249	3,546	3,72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인증을 받은 웹사이트는 하단에 다음과 같이 인증마크를 게시하여 홍보하는 방식으로 인증을 활용함.

웹 접근성 품질인증 부여에 사용되는 인증마크 (웹 사이트 하단에 표시) 1. 도안의 모형은 다음 그림과 같다. 2. 도안의 크기는 웹사이트 또는 응용 소프트웨어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일정 비율로 조정할 수 있다.	
--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개정안은 품질인증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기관등의 우선구매 대상이 되는 지능정보제품에 품질인증 제품을 추가하고,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품질인증 제품의 우선구매를 권고하려는 것임.
- 코로나19 이후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었으나 장애인·고령자가 이용하기 어려운 사용자 인터페이스(UI)⁷⁾로 정보격차가 커지는 상황인 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유·무선 정보통신 접근성 검증을 받은 지능정보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품질인증 제품에 대한 규정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공감할 수 있음.

7) user interface: 휴대폰, 컴퓨터, 내비게이션 등 디지털 기기를 작동시키는 명령어나 기법을 포함하는 사용자 환경을 말함.

- 다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선구매와 품질인증은 적용 대상 및 운영방식 등에 있어 상이한 제도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개정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무인정보단말기를 품질인증의 적용 대상에 추가한 후 국가기관등이 품질인증을 받은 무인정보단말기를 우선 구매하도록 해야 하므로 관련 규정의 정비 등에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 및 이용 편의 보장을 위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제도의 활성화 취지에 공감하며 이를 수용하는 입장임. 다만, 우선적 구매·활용 권고가 국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추후 하위법령에서 권고방법 및 업종 등을 신중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참고로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사회구성원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산업 및 국가의 성장을 통한 새로운 디지털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디지털포용법안」 이⁸⁾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8) ① 「디지털포용법안」 (의안번호 2200551, 고동진의원 대표발의)

제16조(지능정보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 보장)

제18조(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접근성 품질인증 등)

부칙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 제69조제2항제4호 및 제70조제2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디지털포용 증진법안」 (의안번호 2202792, 박민규의원 대표발의)

제19조(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접근성 보장)

제22조(지능정보서비스 및 제품 접근성 품질인증)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정안은 본 개정안의 개정 대상인 제46조 및 제47조를 포함하여 현행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규정들을 이관하여 보완·확대하면서 현행법 제46조 및 제47조를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따라서 「디지털포용법안」 심사 시 개정안의 관련 내용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228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 제69조제2항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